주 의

제 목 토양오염도 검사 업무 부적정
소관부서 ▥▥▥▥처, ▣▣▣▣▣▣소
내 용

▣▣▣▣▣소(이하 “▣▣▣”라 한다)는 2010. ○○. ○○.「토양환경보전법」제2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되었다.

이후 ▣▣▣는「토양오염도 검사 요령」을 제정하여 토양오염도 검사업무를 수행해오다가, 2013. ○○. ○○.「직제규정시행세칙」이 개정되어 해당 업무가 ▥▥▥▥처로 이관되었으나, 계약, 수수료 수납, 결과서 발급 등 행정업무는 ▣▣▣가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.

「토양환경보전법」제13조에 의하면 토양오염검사는 토양오염도검사와 누출검사로 구분하고, 누출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해서 관할 소방서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, 한국석유관리원「토양오염도 검사 요령」제11조는 토양오염도 검사결과를 신청인과 관할 지자체장 및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
그리고 한국석유관리원「토양오염도 검사 요령」제16조에 의하면 토양오염도 검사신청인은 검사 신청 시 검사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, 계약에 의한 검사일 경우에는 체결된 계약 내용에 따라 분석수수료의 할인 및 납부기간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.

‘15년 ○월부터 ○월까지 토양오염도 검사는 계약에 의해 ●건, 일반 신청에 의해 ◎건, 총 ◍건이 접수되었다.

그런데, 계약에 의한 토양오염도 검사 중 대금지급일 이내에 검사수수료가 입금된 건은 1건 뿐이며 나머지는 기일 이후에 입금되거나 계약서에 대금지급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있고, 일반 신청 건은 모두 신청일 이후에 검사수수료가 입금되었다.

한편, 「감사직무규정」 [별표 1] “일상감사의 범위 및 절차” 에 따르면, 일상감사의 범위 중 예정가격 5백만원을 초과하는 제계약의 체결 사항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▣▣▣에서는 ‘15년도 ○월부터 ○월까지 계약에 의해 수행한 토양오염도 검사 ●건 중 3건은 5백만원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상감사를 득하지 아니하였다.

조치할 사항

① ▥▥▥▥처는 검사수수료 납부에 대해서 「토양오염도 검사 요령」 제16조에 따라 신청 시 수수료를 받는 등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, 「토양환경보전법」을 반영하여 「토양오염도 검사요령」의 검사결과 통보 대상자인 소방서장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시기 바랍니다.

② ▣▣▣▣▣▣소는 「감사직무규정」 제3조에 따라 일상감사 대상 계약건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상감사를 받는 등 해당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.